

태백산민박촌 요금제 및 초과료 변경사항

1. 태백산민박촌 요금제 기준 변경

(단위: 원)

구분		변경	
		주중	주말 및 성수기
가족형	15평형 (4인)	55,000	75,000
	18평형 (4인)	60,000	80,000
개인형	9평형 (온돌, 2인)	30,000	45,000
	9평형 (더블침대, 2인)	30,000	45,000

※ “성수기”는 매년 1. 1. ~ 2. 28., 7. 1. ~ 8. 31.

6.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말한다.
7. “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8.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단, 태백산 민박촌의 경우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4. 29.>

2. 태백산민박촌 초과료 징수 기준 변경

초과료 징수기준

기준 구분	초과 구분	초과료	해당시설
일·박·당일	1시간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장 (일반야영장, 특화야영장, 카라반) ◦ 대피소 ◦ 생태탐방원 ◦ 민박촌 ◦ 기타시설 (물품보관함, 탐방안내소, 집회장 등)
	1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사용료 50%	
	4시간 초과	사용료 100%	
구역	기준구역 초과	사용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 야영장 (일반야영장, 특화야영장, 카라반)
인	1인 초과	1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장 (특화야영장, 카라반 최대 2인) ◦ 민박촌 (가족형, 단체형 최대2인, 개인형 최대 1인)
※ 7세 미만의 경우 초과료 대상 미적용 ※ 야영장, 민박촌 1인 초과외의 경우 1박 기준 초과료 징수			